

특별조사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결과

2023. 6.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목 차

| | |
|-------------------------------|----|
| I. 조사 개요 | 1 |
| 1. 조사 배경 및 목적 | 1 |
| 2. 기간 및 대상 | 1 |
| 3. 조사 방식 및 중점 사항 | 2 |
| II. 보조금 현황 및 실태 | 3 |
| III. 조사 결과 | 5 |
| 1. 총평 | 5 |
| 2. 조사 결과 총괄 | 6 |
| 3. 유형별 주요 지적 내용 및 조치 사항 | 8 |
| | |
| 붙임 단체별 지적현황 | 29 |

1. 조사 배경 및 목적

- 국감,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기부금 부적절 사용 논란과 관련하여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 (대통령 지시사항¹⁾, '22.12.27. 국무회의)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집행과정을 점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문화 분야의 재정구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함

2. 기간 및 대상

- (조사기간) '23. 1월 ~ '23. 4월말
- (조사대상) 최근 3년간('20~'22년) 974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된 3,978개 보조사업
 - 최근 3년간 1천만 원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23,130개) 중 국무조정실과 협의²⁾, 사업금액 1억원 미만 사업 등을 제외한 3,978개 사업을 대상

[표 1]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점검·조사 대상

| 분 야 | 사업수(개수) | 예산액(억원) | 단체수(개수) | 비고(사업수 기준) |
|------|---------|---------|---------|------------|
| 문화 | 283 | 1,903 | 84 | 7.1% |
| 예술 | 343 | 1,854 | 157 | 8.6% |
| 관광 | 244 | 992 | 85 | 6.1% |
| 체육 | 2,603 | 9,370 | 493 | 65.4% |
| 문화산업 | 466 | 2,117 | 138 | 11.7% |
| 기타 | 39 | 231 | 17 | 1.0% |
| 계 | 3,978 | 16,467 | 974 | 100.0% |

1) ('22.12.27. 국무회의)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 본 적이 있는지 의문” / “국민의 혈세를 쓴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음. 현재의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음”

2) (국무조정실 점검 제외대상) ①보조사업자가 비영리단체가 아닌 민간보조 사업(328), ②한시종료사업(195), ③감사원 기감사 중인 사업 등(121), ④업무대행 유관법인(325), ⑤현실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종교단체 등)(434), ⑥년 1억 이하 사업 등 기타 검증 필요성이 낮은 경우 (17,749)

3. 조사 방식 및 중점 사항

○ (조사방식) 단계별 점검을 통해 점검 누락 방지 및 문제사업 점검 집중

[표 2] 조사 실시 방식

| | | |
|--------------------------|---|-----------------------------------|
| 1차 점검 | ⇒ | 2차 점검 |
| 3,978개 사업에 대한 서면·현장조사 | | 1차 점검 결과 및 착안사항 중심 선별적 실지조사 실시 |
| 사업부서(본부 47개과) 중심, 감사실 지원 | | 감사TF(25명) 중심 |

- 1차 점검 : 실·국 사업부서가 점검하되, 감사실이 국별 담당자 지정·점검 지원³⁾

· (인 원) 점검대상 3,978개 사업별 現 담당자 점검(본부 13개국 47개과 153명)

· (기 간) '23.2.1. ~ '23.4.7. * 서면점검 및 현장조사

· (점검방식) 사업별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 선정·집행·정산과정에 대해 문제사항 적발, 1·2차 보조사업자의 소명·확인과정 진행

- 2차 조사 : 본부, 산하 공공기관⁴⁾ 감사실 직원으로 감사TF 구성, 실지조사 실시

· (인 원) 총 25명(팀장 1명, 팀원 24명/우리 부 21명, 공공기관 4명)

[표 3] 감사TF 구성현황

| 구분 | 총괄 | 간사 | 감사반원 | | | 합계 |
|----|-----|-----------|---------------|--------------------------|------------------|-----|
| | 감사관 | 감사 담당관 | 現 감사관실 공무원 | 감사경력 2년 이상 감사 有경험 공무원 | 現 공공기관 감사실 직원 | |
| 인원 | 1명 | 1명 | 15명 | 4명 | 4명 | 25명 |

· (기 간) '23.3.1. ~ '23.4.7. *실지(현장)감사 '23.3.8. ~ '23.4.7.

· (점검방식) 감사실 현직자 주관, 지원자⁵⁾는 서류·현지 조사 지원

○ (중점사항)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과정의 적법성(공모 여부,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과정 적절성 등), △목적외 사용 여부(개인 용도 집행 여부, 교부 목적 준수 여부 등), △회계처리 적정성(계약절차 적정성, 허위인건비 지급 여부 등), △정산업무 적정성(적정서류 구비여부, 증빙자료 허위여부, 집행잔액 반환 여부, 사업변경 승인절차 준수 여부 등) 등

3) 감사관실 소속 감사자별(15명)로 담당 사업 지정(1인당 280여개 사업), e-나라도움시스템 상 특이사항 파악·공유

4) (상임감사가 있는 공공기관) 임대, 개야, 대매, 임대

5) 지원자 모두에게 e-나라도움 보조금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실지감사 실시

II

보조금 현황 및 실태

○ **(보조금의 개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한 재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보조금은 행정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기금을 활용하여 공공·경제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재원을 의미함

○ **(보조금 집행관리 절차)**

[표 4] 보조금 집행관리 절차

| | | | | | | | | | | | |
|------------|------------------------|---|-------------------------------|---|--------------------------------|---|-----------------------------|---|--|---|--|
| 절차 | (중앙부처) 보조사업 예산편성 | ⇒ | (중앙부처) 보조사업자 선정(공모, 지정) | ⇒ |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보조금 교부요청 | ⇒ | (중앙부처)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 ⇒ | (보조사업자) 사업 집행 (중앙부처) 사업 실적 점검 | ⇒ | (보조사업자) 실적, 정산보고 (중앙부처) 정산검토 및 확정 |
| 시기 | 8월말(정부안) 11월말(국회) | | 사업수행 전 | | 사업수행 전 | | 사업수행 전 | | 사업수행 중 | | 사업수행 후 |
| 주체 (민간) | 문체부 | | 문체부 | | 공공단체 등 | | 문체부 | | 집행 공공단체 등 점검 문체부 | | 보고 공공단체 등 확정 문체부 |
| (지자체) | | | 문체부 | | 지자체 | | 문체부 | | 집행 지자체 (문화재단, 지방체육회 등) 점검 문체부 | | 보고 지자체 확정 문체부 |

주) 재교부 사업의 경우, ①(공모 사업) 별도 공모 절차 / ②(비공모 사업) 위와 동일한 절차
(주체만 대체: 중앙부처→1차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2차 보조사업자)를 따름

자료 : 재정담당관실 제출자료 재구성

○ **(보조금 예산 현황)** 우리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표 5]와 같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7.2% 증가했고, 문체부 전체 예산 대비 보조사업 비중은 계속해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2022년도 전체 예산(7조 5,066억 원) 중 약 42.5%에 해당하는 예산(3조 1,886억 원)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2021년 3조 747억 원 → 2022년 3조 1,886억 원)하고 있음

[표 5]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2023(본예산) | |
|--------|--------|-------------------|--------|-------------------|--------|-------------------|--------|-------------------|-----------|-------------------|
| | 사업수 | 예산 | 사업수 | 예산 | 사업수 | 예산 | 사업수 | 예산 | 사업수 | 예산 |
| 민간보조 | 648 | 21,093 (35.0%) | 678 | 25,745 (37.9%) | 709 | 30,747 (42.1%) | 740 | 31,886 (42.5%) | 708 | 31,763 (47.1%) |
| 지자체보조 | 265 | 17,406 (28.8%) | 256 | 17,311 (25.5%) | 260 | 16,368 (22.4%) | 273 | 15,573 (20.7%) | 266 | 11,356 (16.9%) |
| 소계 | 913 | 38,499 (63.8%) | 934 | 43,056 (63.3%) | 969 | 47,115 (64.6%) | 1,013 | 47,459 (63.2%) | 974 | 43,119 (64%) |
| 문체부 재정 | 60,342 | | 67,967 | | 72,957 | | 75,066 | | 67,408 | |

주) 최종예산 기준, 괄호 안은 문체부 재정 대비 비율임

자료 : 재정담당관실 제출자료 재구성

○ (보조금 교부현황)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여러 분야의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시 [표 6]과 같이 1차 보조사업자 기준, 민간보조금의 79.8%를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를 다시 민간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재교부하고 있음

[표 6] 2022년 민간보조금 교부(집행) 현황(1차 보조사업자 기준)

(단위: 억 원)

| 기관 유형 | 교부액(집행액) | 사업수 | 비율 | |
|-------------------------|----------|-----|-------|-------|
| | | | 금액 | 사업수 |
| 합계 | 31,664 | 740 | 100% | 100% |
| 공공기관(31개) ¹⁾ | 23,852 | 443 | 75.3% | 59.8% |
| 유관기관(19개) ²⁾ | 1,438 | 33 | 4.5% | 4.5% |
| 민간 | 6,374 | 264 | 20.2% | 35.7% |

주1) 문체부 소관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재교부하는 경우 민간단체(영리·비영리 무관) 93%, 지자체 및 학교 등 3%, 개인 3% 수준임

주2)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립극단 등 중앙 문화예술단체 등 문체부 소관 공직유관단체

자료 : 재정담당관실 제출자료 재구성

Ⅲ

조사 결과

1. 총 평

- 최근 3년간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집행, 정산과정에 대해 1차 사업부서 점검과 2차 감사TF의 실지감사 결과, 26개 등 26개 단체 총 34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었음
- 부적정 유형별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7), ▲집행기준의 초과 지급(6), ▲사업내용의 임의 변경 및 집행(2), ▲회계처리의 부적정(4), ▲계약업무 절차 미준수(4), ▲집행잔액 및 수익금 미반납(3),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간의 내부거래(5), ▲기타 부적정 사례(3) 등으로 34건, 2,845백만 원 상당의 지적 사항이 확인되었음
- 이에 대해 관계부서 등에 부적정한 보조금 관리업무 절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15건)하고, 환수·반납이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반납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18건, 239,246,625원)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지침 마련 등 보조금 집행업무를 개선하도록 통보(4건)하였음
- 지적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여 회계 전담 직원이 없거나, ▲보조금 및 국가회계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금번 지적사례를 숙지하도록 하고, 소관부서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조사 결과 총괄

- 최근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된 3,978개 보조사업별 사업자 선정과정 및 집행·정산과정에 대해 1차 사업부서 점검을 진행한 결과 9건의 부적정한 사항이 적발되었고, 감사TF 실지감사를 통해 [표 7]과 같이 총 34건의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되었음

[표 7] 보조금 점검·조사 결과

| 분야별 | 감사대상 | | (사업부서) 1차 점검 결과 ⁶⁾ | | | (감사실) 2차 조사 지적사항 | |
|------|-------|---------|-------------------------------|-------------|-------------|------------------|-------------|
| | 사업수 | 예산(억 원) | 사업수 | 적발건수 (이상있음) | 2차 조사 반영 여부 | 건수 | 지적금액 (백만 원) |
| 문화 | 283 | 1,903 | 283 | 4 | 1 | 7 | 852 |
| 예술 | 343 | 1,854 | 343 | - | - | 1 | 1 |
| 관광 | 244 | 992 | 244 | 2 | - | 7 | 23 |
| 체육 | 2,603 | 9,370 | 2,603 | - | - | 8 | 1,639 |
| 문화산업 | 466 | 2,117 | 466 | 3 | 3 | 11 | 330 |
| 기타 | 39 | 231 | 39 | - | - | - | - |
| 계 | 3,978 | 16,467 | 3,978 | 9 | 4 | 34 | 2,845 |

- 감사 결과 34건의 부적정한 사안에 대해서 [표 8]과 같이 18건, 239,246,625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반납 조치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부적정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1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4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 관련 내부규정 개정 및 향후 재발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통보” 조치하였음

6) 1차 점검 결과 중 단순 집행 절차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 환수불인정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 2차 조사 반영

| 분야 | 사업명 | 단체명 | 지원금액 (백만원) | 1차 점검 의견 | 확인 내용 |
|-------|------------------------|--------------------------|------------|---------------------------|----------------------|
| 문화 | 2021년 <u>가가</u> 운영지원 | <u>가가</u> | 180 | 출장여비(3만원) 오지급 | 사업부서 자체조치 |
| | 공공수어 보급 및 수어교육 지원 사업 | <u>대대</u> | 220 | 내부 직원대상 사례비 지급 | 2차 조사 확인 |
| | 2022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 <u>대대</u> | 600 | 예산비목과 다르게 집행 (2건, 56만 원) | 사업부서 자체 조치 |
| | 풍석 학술진흥 연구 | <u>래래</u> | 608 |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 | 조치 완료 사항 |
| 관광 | 2022 관광인력 고용보험 정착지원 사업 | <u>대대</u> | 120 | 회계연도가 다른 유지보수기간에 대해 비용 지급 | 사업부서 자체조치 |
| | 광주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 <u>매매</u> | 200 | 직원 4대 보험 과다집행 등 | 사업부서 자체조치 |
| 문화 산업 |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 <u>바바</u> , <u>새사</u> | 453 | 미참가 강사로 등에 대한 집행 | 자체조치 진행중 2차 조사 확인 |
| | 2020 패션디자이너 역량강화 지원 | <u>애아</u> | 200 | 사업자 사정에 따른 미정산 | 2차 조사 확인 |
| | 2021 패션디자이너 역량강화 지원 | <u>애아</u> | 180 | 사업자 사정에 따른 미정산 | 2차 조사 확인 |

[표 8] 조치 요구 현황

□ 총괄현황

(단위: 건, 백만 원)

| 합계 | | 주의 | 통보 (환수반납) |
|------|---------|----|--------------|
| 조치건수 | 환수 반납금액 | | |
| 37 | 239 | 15 | 22 (239) |

□ 유형별 조치 요구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 적발유형 | 건수 | 지적금액 (백만 원) | 조치유형 | | |
|-----------------|-----------|----------------|-----------|------------------------------------|-----------|
| | | | 주의 | 통보 (환수처분/금액) | 계 |
| 목적외 사용 | 7 | 185 | 2 | 7 (7 / 185,283,625원) | 9 |
| 집행기준 초과 지급 | 6 | 35 | 3 | 5 (5 / 34,788,600원) | 8 |
| 사업내용 임의변경·집행 | 2 | 11 | 2 | 1 (1 / 1,080,000원) | 3 |
| 회계처리 부적정 | 4 | 556 | 1 | 3 (1 / 108,400원) | 4 |
| 계약업무 절차 미준수 | 4 | 1,122 | 1 | 3 (1 / 1,150,000원) | 4 |
| 집행잔액·수익금 미반납 | 3 | 119 | 2 | 1 (1 / 400,000원) | 3 |
| 임직원 등과의 내부거래 | 5 | 11 | 4 | 1 (1 / 400,000원) | 5 |
| 기타 | 3 | 806 | - | 1 (1 / 16,036,000원) | 1 |
| 계 | 34 | 2,845 | 15 | 22 (239,246,625원) | 37 |

3. 유형별 주요 지적 내용 및 조치 사항

①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 보조금법 제22조(용도의 사용 금지)에 따라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교부 결정의 내용,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래 [표 9]와 같이 보조사업의 목적·내용과 다르게 집행

[표 9] 보조금 목적외 사용 명세

(단위: 백만 원)

| 연번 | 보조사업자 | 사업명 | 지원금액 | 지적금액 | 적발내용 | 조치사항 |
|----|------------|---------------------------|-------|-------|---|--------------|
| 1 | 자자 | 2022 공예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210 | 1.2 | ▪ 내부직원에 대한 사례비 집행 ▪ 자문회의 미참석자에 대한 사례비 집행 | 통보 |
| 2 | 자자 | 2021 오르락내리락 건강한 산행문화 교육사업 | 19 | 1 | ▪ 단체 기관운영 경비로 보조금 집행 | 통보 |
| 3 | 카카 | 스포츠클럽 육성사업('20~'21) | 300 | 3 | ▪ 사업내용이 다른 보조사업에 사용 | 통보 |
| 4 | 타타 | 만화 해외진출 지원사업('21~'22) | 868 | 5 | ▪ 사업대상이 아닌 대상에 대해 집행 | 통보 |
| 5 | 하하 등 5개 단체 |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20~'22) | 4,224 | 5.2 | ▪ 보조금 교부 약정서 내용과 다르게 집행 | 통보, 주의 |
| 6 | 가사 |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 1,280 | 4.7 | ▪ 보조금 교부 약정서 내용과 다르게 집행 | 통보, 주의 |
| 7 | 바바·사사 | 2022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 453 | 165 | ▪ 미참가 강사에 대한 강사로 지급 등 | 통보 |
| 계 | 7 | 7 | 7,354 | 185.1 | | 통보(7), 주의(2) |

① 공예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 목적외 사용

- 자자(대표 A)은 공예가의 자생력 구축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대표 B)이 추진하는 '2022 공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실제 사업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비를 내부직원에게 지급하거나 미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활용비 1,150,000원(7)을 집행

☞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 운영지침과 다르게 집행한 전문가활용비 1,150,000원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반환·불인정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 오르락내리락 건강한 산행문화 교육사업 목적외 사용

- ☞☞(대표 C)은 간접사업자로서 ‘2021 오르락내리락 건강한 산행문화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표자가 같은 ☞☞(대표 C)의 법인설립 공증료 및 ☞☞ 사무실 관리비 등 [표 10]과 같이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1,002,620원을 집행

[표 10]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원)

| 연번 | 보조사업자명 | 집행 비목명 | 집행일자 | 거래처명 | 집행용도 | 집행금액 |
|----|--------|------------|------------|------|---------------------|-----------|
| 1 | | 운영비 임차료 | 2021-09-23 | | 스포츠클럽 법인등록 공증인증료 | 30,000 |
| 2 | | 운영비 임차료 | 2021-09-23 | |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 165,000 |
| 3 | | 운영비 임차료 | 2021-11-30 | | 사무실 관리비 지급 | 807,620 |
| 계 | | | | | | 1,002,620 |

자료 : e-나라도움시스템 집행내역 재구성

☞ (체육국 체육정책과장) 간접보조사업자(☞☞)가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 1,002,620원을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반환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관리·감독 및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보조사업자인 ☞☞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

③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목적외 사용

- ☞☞(대표 D)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교부 받아 ‘스포츠클럽육성사업’과 보령시 체육회가 위탁한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위탁사업을 함께 운영하던 중,

7) 실제 회의 참석여부 미확인된 외부 전문가(AJ) 활용비 오지급(1회, 300천 원)과 내부 참여인력(AK)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3회, 850천 원) 지급

위탁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야구) 강사비 3,030,000원⁸⁾을 국고보조금으로 집행

☞ (체육국 체육진흥과장) 보조사업자(☐☐)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강사비 3,030,000원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④ 만화 해외진출 지원사업 목적외 사용

- ☐☐(대표 E)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만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 감사대상기간(2021년~2022년) 동안 [표 11]과 같이 4개의 수출작품의 번역 및 재제작을 위한 스케치업 배경구매투입비를 지원하였으나, 사업과 관련 없는 작품의 신규 제작을 위한 배경을 구매하는 등 5,026,932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표 11] ☐☐ 수출작품 번역 지원사업 현황(2021~2022)

(단위: 원)

| 연도 | 작품명 | 번역 언어 | 국고보조금 | | | 부적정금액 | 비고 |
|------|-----|-------|------------|------------|------------|-----------|----|
| | | | 예산 | 집행금액 | 배경구입예산 | | |
| 2021 | | 중국어 | 10,000,000 | 23,243,191 | 6,000,000 | 2,243,191 | |
| | | 영어 | 10,000,000 | | | | |
| | | 영어 | 10,000,000 | | | | |
| 2022 | | 영어 | 10,000,000 | 4,966,602 | 2,000,000 | 966,602 | |
| | | 영어 | 10,000,000 | 5,817,139 | 2,000,000 | 1,817,139 | |
| 계 | | | 50,000,000 | 34,026,932 | 10,000,000 | 5,026,932 | |

자료 : ☐☐ 제출자료 재구성

☞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장) 간접보조사업자(☐☐)가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 5,026,932원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반환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조치하고,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보조사업자인 ☐☐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

8) 위탁사업비로 집행한 다른 프로그램(배드민턴)과 다르게, 2020, 2021년 야구교육 프로그램 강사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집행(20년 630,000원, 21년 2,400,000원)

⑤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목적외 사용

- 영화진흥위원회(대표 F)는 예술영화 상영 및 관람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 방식으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 선정된 상영관과 ‘독립영화·예술영화 상영작에 한하여 상영료를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감사대상기간(2020년~2022년) 동안 [표 12]와 같이 5개 상영관에게 국고보조금 교부 약정서와 다르게 일반영화 상영을 위한 보조금 5,136,404원을 지원

[표 12]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일반영화 상영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원)

| 보조사업자 (상영관) | 2020 | | 2021 | | 2022 | | 계 | |
|----------------|------|---------|------|---------|------|-----------|-----|-----------|
| | 상영수 | 보조금 | 상영수 | 보조금 | 상영수 | 보조금 | 상영수 | 보조금 |
| 해해 | - | - | 2 | 239,813 | 10 | 2,168,591 | 12 | 2,408,404 |
| 가나 | - | - | 1 | 6,000 | 2 | 90,773 | 3 | 96,773 |
| 가다 | 6 | 611,500 | - | - | 4 | 899,500 | 10 | 1,511,000 |
| 가라 | - | - | 2 | 472,727 | 1 | 600,000 | 3 | 1,072,727 |
| 가마 | - | - | 1 | 47,500 | - | - | 1 | 47,500 |
| 계 | 6 | 611,500 | 6 | 766,040 | 17 | 3,758,864 | 29 | 5,136,404 |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①국고보조금 교부 약정서에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국고보조금 5,136,404원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반환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약정서와 다르게 집행하지 않게 보조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⑥ 부산국제영화제 사업 목적외 사용

- [가사](대표 G)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고보조금 교부 시 영화진흥위원회(대표 F)와 ‘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사무국장 등 임원급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는데도, 국고보조금 교부 약정서와 다르게 사무국장에게 행사기간 동안의 인건비 4,735,85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집행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①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약정서에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국고보조금 4,735,850원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국고보조금 교부 시 약정한 용도와 다르게 집행한 보조사업자인 ㉠㉡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약정서와 다르게 집행하지 않게 보조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⑦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 보조금 목적외 사용

- 한국콘텐츠진흥원(대표 H)은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대표 I)과 ㉠㉡(대표 J)를 공동수급(컨소시엄) 방식으로 선정·교부하였으나, ㉠㉡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사례비(전문가 활용비, 강사료 등) 또는 인건비(급여) 지급, ▲사업 내용과 관계없는 소프트웨어 임차료 지급, ▲실제 과업 수행 여부가 불분명한 원고 작성 용역비 지급 등 [표 13]과 같이 국고보조금 총 165,201,819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을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통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음

[표 13] ㉠㉡ 보조금 부적정 집행 명세

(단위: 원)

| 적발유형 | 건수 | 금액 | 집행내역 |
|-----------------|----|-------------|---|
| 사업내용에 없는 물품임차 | 3 | 46,400,000 | 소프트웨어 임차(1건, 13,400,000)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용료(1건, 18,000,000) 서버 클라우드 이용료(1건, 15,000,000) |
| 사업 미참가인력 인건비 지급 | 25 | 104,685,000 | 전문가 활용비(20건, 88,705,000) 행정직원 인건비(3건, 13,680,000) 강사인건비(2건, 2,300,000) |
| 교부조건 위반 지출 | 1 | 36,819 | G_star 관람료(1건, 36,819) |
| 미확인 과업에 대한 지출 | 1 | 14,080,000 |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관련 원고료(1건, 14,080,000) |
| 계 | 30 | 165,201,819 | |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간접보조사업자 ㉠㉡가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국고보조금 및 이자발생액 등 총 165,908,749원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불인정 처리, 보조금 반환 등

의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 보조금 집행기준 초과지급

○ 보조금법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2조 제2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금 관련 법령과 교부조건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표 14]와 같이 보조금 교부조건 및 내부 지급기준 등을 초과하여 집행한 점이 확인됨

[표 14] 보조금 지급기준 초과 지급 현황

(단위: 백만 원)

| 연번 | 보조사업자 | 사업명 | 지원금액 | 지적금액 | 적발내용 | 조치사항 |
|----|-------|---|--------|------|--|-----------------|
| 1 | 개채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20~'22) *12개 보조사업 | 5,220 | 13.9 | 자체 내부 지침을 초과하여 회의·강 사료 등 지급 | 통보, 주의 |
| |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지원('20~'22) *3개 보조사업 | 751 | 0.6 | | |
| 2 | 개채 | 지역문화진흥('20~'22) *11개 보조사업 | 23,531 | 0.9 | 자체 내부 지침을 초과하여 회의·강 사료 등 지급 | 통보 |
| 3 | 개채 |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 | 480 | 14.7 | 실제 강의·지도 시간과 관계없이 지급 | 통보, 주의 |
| 4 | 대대 | 공공수어 보급 및 수어교육 지원 사업('20~'21) | 370 | 3.9 | 교부조건 등과 다르게 내부직원에게 수 당 지급 | 통보, 주의 |
| 5 | 개채 | 2022 태권도사범 해외파견 사업 | 6,000 | 0.7 | 내부 지급기준을 초과한 주택수당 지급 및 해외파견자의 동반가족의 비자발급 경비 집행 | 통보 |
| 계 | 5 | 6 | 36,352 | 34.7 | | 통보(5), 주의(3) |

①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사업 등 지급기준 초과 지급

- 개채(대표 K)는 감사대상기간(2020년~2022년) 동안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과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내부 회계관련 지침을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했는데도, 내부 강사비 지급규정과 회의비 지급기준을 초

과하여 14,500,000원⁹⁾을 집행

- ☞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장) ①보조사업자(☐☐)가 자체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결정한 사례비 14,500,000원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자체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앞으로 보조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② 지역문화진흥사업 사례비 지급기준 초과 지급

- ☐☐(대표 L)는 국고보조사업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대가지급 기준’을 자체 내부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감사대상기간(2020년~2022년) 동안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면서 사례비 등을 지급 시 내부 지침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총 9건, 890,000원을 과다 집행

- ☞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장) 보조사업자(☐☐)가 자체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결정한 사례비 890,000원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③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 사례비 지급기준 초과 지급

- ☐☐(대표 M)은 보조사업 ‘2021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 추진 시 전문가 활용비를 활동시간×단가(73,000원)로 지급하기로 편성하였는데도, 실제 전문가가 활동한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계약(‘21.6.16.~’21.12.10.)을 체결하여 정액으로 지급하였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대표 H)은 지출증빙서류와 활동보고서 상 활동시간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정산보고를 승인

-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①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산정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집행한 국고보조금 14,746,000원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및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9) 감사대상기간(2020년~2022년) 동안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사업 5건, 13,900,000원,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사업 1건 600,000원 초과 지급

④ 공공수어 보급 및 수어교육 지원 사업 관련 내부직원 업무 조력비 지급

- **내내**(대표 N)는 ‘공공수어 보급지원’사업 중 수어 영상을 제작하면서 교부조건¹⁰⁾ 및 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내부직원(6명)에게 통역편집 및 자문·감수 수당 3,950,000원¹¹⁾을 집행하였고, 국어정책과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인정하여 정산 확정

☞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장)** ①**내내**가 보조금 교부조건과 다르게 내부직원에게 지급한 업무조력 수당 3,950,000원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⑤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사업 파견수당·경비 초과 지급

- **가타**(대표 O)은 ①‘2022년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캄보디아 파견 사범에게 주택수당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702,600원을 지급하고¹²⁾, ②동반가족의 파견경비(항공료, 일비, 식비, 이전비)에 대한 지원근거¹³⁾를 마련하고 있으나, 동반가족의 비자발급 부대비용(코로나검사비, 거주등록비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급

☞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팀장)** **가타**이 해외파견 사범에게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주택수당 702,600원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파견자에 대한 지원근거와 범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부지침으로 규정·운영하도록 “**통보**”

③ 보조사업 내용 임의 변경 및 집행

10) 해당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침상 직원은 직접담당업무 또는 소속된 기관의 사무와 관련해 업무조력을 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됨
11) (2020년도) 통역편집수당-AL(1,000,000원), AM(400,000원), (2021년도) 영상촬영 감수수당-AN(750,000원), 영상제작 자문수당-AO(800,000원), AP(800,000원), 통역편집수당-AQ(200,000원)
12) 캄보디아 파견 사범(AR)이 ‘주택수당’ 21,780,600원을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신청액보다 702,600원 더 많은 22,483,200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힘
13)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사업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2조 사업수행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파견사범과 배우자·자녀의 파견국가 부임 및 귀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파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지침에 정한다.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사업 운영 및 관리 시행지침’ 제11조제1항 파견국가 부임, 전임 시 파견사범·동반배우자·3명 이내의 20세 미만 동반 미혼자녀에게 파견경비(항공료, 일비, 식비, 이전비)를 지급한다.

- 보조금법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표 15]와 같이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보조사업의 내용(예산, 기간 등)을 변경하고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됨

[표 15] 보조사업 내용 임의 변경 및 집행 명세

(단위: 백만 원)

| 연번 | 보조사업자 | 사업명 | 지원금액 | 지적금액 | 적발내용 | 조치사항 |
|----|-------|--------------------|------|------|----------------------------------|--------------|
| 1 | 가파 | 2021 서울 인디 뮤직 페스티벌 | 400 | 1.1 | ▪ 당초 사업계획상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임차료 집행 | 통보, 주의 |
| 2 | 가해 | 언어·문화 자원봉사단 지원 | 165 | 9.9 | ▪ 당초 사업계획상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홍보사업 진행 | 주의 |
| 계 | 2 | 2 | 565 | 11 | | 통보(1), 주의(2) |

① 인디페스티벌 개최지원 사업 기간 임의 변경

- 가파(대표 P)은 인디음악업계 활성화 및 상생 도모를 위한 '2021 서울 인디뮤직 페스티벌'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관서의 변경 승인도 없이 사업기간(2021. 10월 ~ 2022. 1월)과 다르게 장소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1개월의 임차료 1,080,000원을 초과 지급

☞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장) ①보조사업자(가파)가 사업 기간 종료 이후의 사무실 임차료로 사용한 국고보조금 1,080,000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보조사업 변경내용 사전 승인 등 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보조사업자인 가파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② 언어문화 자원봉사단 사업 기간 임의 변경

- **가하**(대표 Q)는 관광통역 및 안내 자원봉사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변경승인¹⁴⁾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제주도 홍보캠페인('23. 1. 5.~'23. 1. 6./9.9백만원)을 추진

☞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장) 보조사업 변경내용 사전 승인 등 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보조사업자인 **가하**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내용 임의변경 또는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4] 보조사업 회계처리 부적정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4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교부조건으로 계약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정하였는데도, [표 16]과 같이 관련 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과 다르게 집행한 점이 확인됨

[표 16] 보조사업 회계처리 부적정

(단위: 백만 원)

| 연번 | 보조사업자 | 사업명 | 지원금액 | 지적금액 | 적발내용 | 조치사항 |
|----|-----------|---------------------------------|-------|-------|---|----------------|
| 1 | 대개 |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in 세종 | 720 | 0.1 | ▪ 다른 보조사업 출장비를 오지급(7건) 및 정산 | 통보 |
| 2 | 개개 | 2020 개개 운영지원 | 200 | 1.8 | ▪ 임원 직무수행경비에 대해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실시(2명) | 통보 (시정완료) |
| 3 | 대래 | 국민체력인증 | 165 | 0.5 | ▪ 직원의 연장근무 및 휴일수당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 | 통보 |
| 4 | 대매 | 부정행위 예방 모니터링 및 적발인력 운영('20~'22) | 602 | 554 | ▪ 보조사업수행 인력에 대해 별도 채용 없이 단체직원 활용 및 인건비 보전 | 주의 |
| 계 | 4 | 4 | 1,687 | 556.4 | | 통보(3) 주의(1) |

14) 사업기간내 홍보캠페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나,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 종료 후 실시

① 대한민국연극제 사업 출장비 회계처리 부적정

- [대표 R]는 공연예술의 수준 향상 및 일반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대표 S)가 추진하는 2020년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in 세종’ 수행하면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한 경비만을 포함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보조사업과 무관한 다른 보조사업¹⁵⁾의 출장비 운임을 포함, 정산 보고하여 총 7건 108,400원을 오지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간접보조사업자([대표])가 착오에의해 오지급한 출장여비 108,400원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 [대표 T] 운영 지원사업 소득세 회계처리 부적정

- [대표 T]는 [대표] 운영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원의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도 임원 2명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 1,848,000원을 징수·납부하지 않았고, 국제문화과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정산 확정¹⁶⁾

☞ (문화정책관 국제문화과장)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 후 감사기간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납부하는 등 이행조치를 완료하였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시정완료)” 조치

③ 국민체력인증사업 소득세 회계처리 부적정

- [대표 U]는 ‘영동군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시 참여인력 5명에 대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 536,940원¹⁷⁾을 징수·납부하지 않음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보조사업자([대표])가 미납부한 소득세 536,940원을 납부하도록 “통보”

15) [대표]가 수행한 ‘2020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출장경비를 행정 착오로 오지급 처리

16) 감사기간 중인 2023. 4. 19. 누락된 소득세 등 납부 완료

17) 지자체(영동군) 보조금으로 지급된 인건비 해당분에 대한 원천징수 미납액 1,250,370원은 별도

④ **내배** 부정행위 예방 모니터링 사업 인건비 회계처리 부적정

- **내배**(대표 V)는 야구 경기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부정행위 예방 모니터링 및 적발인력 운영’을 추진하면서,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 절차에 따라 채용하지 않고 경기진행 관리를 위해 기존에 이미 계약¹⁸⁾되어 있던 ‘경기운영위원회’를 경기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부과하면서 모니터링사업 인건비를 지급

☞ (체육국 스포츠산업과장) ‘부정행위 예방 모니터링 및 적발인력 운영’을 추진할 때 보조금 지침과 다르게 직원인 ‘경기운영위원회’에게 보조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⑤ 계약업무 절차 미준수

○ 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서상의 교부조건,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국가계약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표 17]과 같이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식과 다르게 계약업무를 수행함

[표 17] 보조사업 계약업무 절차 미준수

(단위: 백만 원)

| 연번 | 보조사업자 | 사업명 | 지원금액 | 지적금액 | 적발내용 | 조치사항 |
|----|-----------|--------------------------|-------|---------|--|-----------------|
| 1 | 내재 | 2021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 367 | 1 | 음향장비 임대차 계약업체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절차 미이행 | 통보 |
| 2 | 내재 |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20~'22) | 2,240 | 822 | 일반경쟁 입찰대상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 | 통보 |
| 3 | 개해 | 외국인 언어불편해소 지원 | 500 | 8.8 | 용역계약에 대한 이행관리 및 검수 소홀 | 주의 |
| 4 | 내배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야구장 만들기 | 290 | 290 | 2천만 원 초과 계약 시 G2B 미이용 낙찰자가 아닌 업체와의 임의 계약 체결 | 통보 |
| 계 | 4 | 4 | 3,397 | 1,121.8 | | 통보(3), 주의(1) |

① 문화가 있는날 청춘 마이크사업 계약 이행관리 부적정

18) 경기운영위원회 채용계약서에 모니터링 업무를 포함, 보조금예산과 자체예산을 병합하여 급여 지급

- **내사**(대표 W)는 **내아**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음향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음향임대업체의 계약이행 중도포기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및 선급금 정산 등을 하지 않아 [표 18]과 같이 1,150,000원을 과다 지급

[표 18] 보조사업자(**내사**) 음향 장비 임대업체와 체결한 계약현황

| 구분 | 당초 계약내용 | 내아 이 실제 수행한 내용 | |
|-------|--|-----------------------|------------------------|
| 계약기간 | 2021. 5. 1. ~11. 28. | 수행기간 | 2021. 5. 1. ~ 7. 31. |
| 계약내용 | 공연 26회, 오디션 1회 | 수행내용 | 공연13회, 오디션 1회 |
| | | (정산금액) | 11,200천원(14회×800,000원) |
| 계약금액 | 21,600,000원(=27회×800,000원) | 기지금액 | 중도금 12,350,000원(1~3차) |
| 상환필요액 | 1,150,000원(=기지금액 12,350,000원 - 정산금액 11,200,000원) | | |

자료: **내사** 제출자료 재구성

- ☞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장) 간접보조사사업자(**내사**)가 과다 지급한 용역비 1,150,000원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조치하고, 간접보조사사업자(**내사**)에 대한 보조금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보조사업자인 **내아**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

②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 지원 사업 계약체결 업무 부적정

- 간접보조사사업자인 **내사**(대표 X)는 '외국어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위탁 계약업체를 선정하면서 해당 과업의 수행능력을 보유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경쟁입찰 등의 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3년 동안¹⁹⁾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조사업자인 **내사**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정산 확정
- ☞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장) 보조금 집행 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간접보조사사업자(**내사**)에 대한 보조금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보조사업자인 **내사**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

19)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내사**와 수의계약(총 3건, 계약금액 822백만 원)으로 체결

③ 외국인 언어불편해소 지원 사업 계약업무절차 미준수

- **㉠**(대표 Q)는 국고보조사업 ‘외국인 언어 불편 해소 지원사업’ 관련 언론홍보를 위한 홍보 대행계약(20. 9. 1.~12. 31./29백만원)을 체결·운영하면서 계약업체의 과업 수행 및 계약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²⁰⁾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검수 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관광기반과는 보조사업 실적에 대한 시정 조치를 명하지 않고 정산을 확정함

☞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장)**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용역 이행 검사를 하는 등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보조금 정산 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④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야구장 만들기 사업 계약업무 절차 미준수

- **㉡**(대표 V)는 2021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야구장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구장별 경비, 방역소독 및 청소 용역에 대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하지 않고²¹⁾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등 계약업무 절차 미준수

☞ **(체육국 스포츠산업과장)**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

⑥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수익금 미반납

○ 보조금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수익금의 반환심사를 받거나 동 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20) 계약기간(‘20.9.1.~’20.12.31.) 중 일부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4개월간 최소 8회) 보다 성과(7회 언론 홍보) 저조 및 콘텐츠 노출 미달성

21)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한다.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표 19]와 같이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함

[표 19]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수익금 미반납

(단위: 백만 원)

| 연번 | 보조사업자 | 사업명 | 지원금액 | 지적금액 | 적발내용 | 조치사항 |
|----|-------|-----------------------------|-------|-------|---------------------------------------|-----------------|
| 1 | 내태 | 바둑대회개최 지원사업('20~'22) | 2,416 | 0.4 |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대회 참가비) 미반납 | 통보 |
| 2 | 내과 |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운영('20~'22) | 600 | 96.7 |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승인 없이 해당 보조사업 재사용 | 주의 |
| 3 | 내화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최 지원('20~'22) | 1,300 | 22.1 |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승인 없이 해당 보조사업 재사용 | 주의 |
| 계 | 3 | 3 | 4,316 | 119.2 | | 통보(1), 주의(2) |

① 바둑대회 개최 지원사업 보조금 수익금 관리 부적정

- 내태(대표 AA)는 바둑문화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아마추어 바둑대회를 개최하면서, 감사대상기간(2020년~2022년) 동안 대회참가비 등 수익금을 보조사업에 재사용하고 잔액 400,000원('20년 300,000원, '21년 100,000원)을 단체 계좌에 보관하고도 주관부서에 이를 보고하거나 심사를 받은 적이 없음이 확인됨
- ☞ (체육국 체육정책과장) 간접보조사업자(내태)가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 심사 및 반환 심사 등을 거쳐 그 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단체 계좌에 예치 중인 수익금 잔액 400,000원에 대해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운영 사업 수익금 관리 부적정

- 내과(대표 AB)는 감사대상기간(2020년~2022년) 동안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운영'사업을 수행하면서, 교육 수강료 등 수익금 총 96,675,479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발생한 수익금과 집행내역을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주관부서의 심사를 받지 않고 있었음
-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반환 심사 및 정산 시 심사 등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③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최사업 수익금 관리 부적정

- **내화**(대표 AC)는 감사대상기간(2020년~2022년) 동안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최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제작한 기념품 판매 수익 총 22,105,4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발생한 수익금과 집행내역을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주관부서의 심사를 받지 않고 있었음
-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반환 심사 및 정산 시 심사 등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⑦ 보조사업단체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단체(업체)와의 거래 부적정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²²⁾이 운영하는 단체(업체)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표 20]과 같이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가 확인됨

[표 20]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단체와 거래 현황

(단위: 백만 원)

| 연번 | 보조사업자 | 사업명 | 지원금액 | 지적금액 | 적발내용 | 조치사항 |
|----|-----------|--------------------------|------|------|--|------|
| 1 | 내화 | 2022년 관광기금 용자 상시 지원센터 운영 | 150 | 2.45 | 주관부서 승인 없이 대표자가 같은 단체에 대관료 등 지급(개정지침 통보 전) | 주의 |
| | |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 대상 관광 안내 사업 | 400 | 0.4 | 주관부서 승인 없이 대표자가 같은 단체에 대관료 등 지급(개정지침 통보 전) | 주의 |
| | | 2022 관광인력 고용보험 정착지원 사업 | 120 | 0.4 | 주관부서 승인 없이 대표자가 같은 단체에 대관료 등 지급(개정지침 통보 후) | 통보 |
| | |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관련 사업 | 457 | 1 | 주관부서 승인 없이 대표자가 같은 단체에 대관료 등 지급(개정지침 통보 전) | 주의 |
| 2 | 내채 | 2022 세계 한국어 | 600 | 7 | 주관부서 승인 없이 대표자가 같은 | 주의 |

2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내용에 따라, 내부거래 제한되는 임직원 등의 범위가 다르게 적용

| 구분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
|-----------------|--|
| 2022.5.16. 이전 | •(거래제한 규정 없음) |
| 2022.5.16. <신설> | •(거래제한) 보조사업자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관계 포함) •(예외)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2023.3.15. <개정> | •(거래제한) 보조사업자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관계 포함) •(예외)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연번 | 보조사업자 | 사업명 | 지원금액 | 지적금액 | 적발내용 | 조치사항 |
|----|-------|-----|-------|-------|-------------------|--------------|
| | | 한마당 | | | 단체에 학술대회 운영 대금 지급 | |
| 계 | 2 | 5 | 1,727 | 11.25 | | 통보(1), 주의(4) |

① **대리** 대표자가 운영하는 단체와의 거래 부적정

- **대리**(대표 AE)는 2022년도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사업 등 4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22. 5. 16.)으로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표 21]과 같이 대관료 총 4,250,000원(’22. 5. 16. 이후 지급액)을 지급하였음

[표 21] **대리** 대표자가 동일한 단체와의 거래 현황

(단위: 원)

| 사업명 | 거래 단체(업체) | 지급 금액 | 집행내역 | 주관부서(지침통보시기 ²³⁾) |
|--------------------------|-----------|----------------------|-----------|--|
| 관광기금 융자 상시 지원센터 운영 | 매가 | 2,450,000 | 회의실 대관 7회 | 관광정책과(미통보) |
|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 대상 관광 안내 사업 | | 400,000 (지침 통보 전) | 회의실 대관 2회 | 국제관광과 (1차 교부: 미통보, 2차 교부: ’22.8.) |
| 관광인력 고용보험 정착지원 사업 | | 400,000 | 회의실 대관 2회 | 관광기반과(’22.6.) |
|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관련 사업 | | 1,000,000 | 회의실 대관 5회 | 관광정책과(미통보) 관광기반과(미통보) 관광산업정책과(미통보) |
| 계 | | 4,250,000 | | |

자료: e나라도움 자료 재구성

- ☞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장) 향후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단체 등과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 ☞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장) 향후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단체 등과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23) ‘관광기금 융자 상시 지원센터 운영’과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관련 사업’은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당시(’22. 2. ~8.) 또는 이후에 보조사업자에게 개정 지침이 통보되지 않았고,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 대상 관광 안내 사업’은 1차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22. 5.) 이후 2차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22. 9.) 전까지 보조사업자에게 개정 지침이 통보되지 않았으며, ‘관광인력 고용보험 정착지원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22. 6.) 당시 개정된 지침을 통보 받았음에도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대관료를 집행함

- ☞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장) ①보조사업자(대라)가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임직원이 운영하는 단체(대개)에 집행한 대관료 400,000원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반납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향후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단체 등과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 ☞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장) 향후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단체 등과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② 내채 대표자가 운영하는 단체와의 거래 부적정

- 내채(대표 AG)는 2022년도 ‘세계 한국어 한마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던 중,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22. 5. 16.)으로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대표자가 같은 내아(대표 AG)에 ‘학술대회 분과 운영’ 과업을 위탁하고 용역사업비 7,000,000원(22. 11. 1.)을 지급
-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장) 향후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단체 등과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⑧ 기타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 부적정

- 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4조에 따르면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표 22]와 같이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에 소홀한 점이 확인됨

[표 22] 기타 보조사업 집행관리 부적정

(단위: 백만 원)

| 연번 | 보조사업자 | 사업명 | 지원금액 | 지적금액 | 적발내용 | 조치사항 |
|----|------------------|-------------------------|--------|-------|---|---------|
| 1 | ☐☐☐ | 2020 ☐☐☐ 사업활동지원 사업 | 10,193 | 14.9 | ▪ 보조사업(홈페이지 기능개선) 과업대상 및 범위 선정 등 보조사업 관리 부실 | ②_②와 병합 |
| 2 | ☐☐☐ 등 45개 회원종목단체 | 국가대표 훈련지원('20~'22) | 86,695 | 789.9 | ▪ 훈련계획 변경사항 미반영에 따른 훈련수당 과지급 ▪ 국가대표 선수수당 지급절차 및 훈련일수 인정기준 등 관리체계 개선 필요 | 통보 |
| 3 | ☐☐☐ |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운영('21~'22) | 400 | 1.1 | ▪ 보조금 교부약정서에 금지항목에 대해 승인 등 관리 부적정 | ⑥_③과 병합 |
| 계 | 3 | 3 | 97,288 | 805.9 | | 통보(1) |

① 2020년 '☐☐☐ 사업활동지원 사업' 관리 부적정

- ☐☐☐(대표 L)는 2020년도 '☐☐☐ 사업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운영·활용하고 있지 않아 용역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했던 지방문화원 홈페이지(22개소)를 개선용역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표 23]과 같이 보조금 산출 등을 적정하게 하였더라면 집행되지 않았어야 할 보조금 14,916천 원을 과다 지급

[표 23] 지방문화원 홈페이지 개선사업 현황

(단위: 원)

| 구분 | 사업계획서상 사업대상 | 원료보고서상 사업대상 | | |
|--------|------------------------------|------------------------------|------------------------------|----------------------------|
| | | 인정 | 불인정 | |
| | | 정상 원료 | 자체운영·미운영 | 사업대상 감소 |
| 대상수 | 79 | 57 | 19 | 3 |
| 예산·집행액 | 55,000,000 (79개소×696,000) | 38,646,000 (57개소×678,000) | 12,882,000 (19개소×678,000) | 2,034,000 (3개소×678,000) |
| 정산금액 | 53,570,000 (79개소×678,000) | 38,646,000 | 14,916,000 | |

자료: ☐☐☐ 제출자료 재구성

- ☞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장)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용역계약 금액 과다 산출 및 계약업무 소홀로 인해 초과 지급한 14,916,000원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②_②와 병합 조치)

② 국가대표선수 훈련수당 등 관리업무 부적정

- 대한체육회(회장 AH)는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훈련 효과 제고를 위

해 종목별 국가대표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훈련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일자별 훈련내용과 참가인원 등 실제 훈련 여부를 확인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① 회원종목단체가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휴식, 외박, 훈련내용 미기재 등 훈련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제 훈련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감사대상기간(2020년~2022년) 동안 총 36개 회원종목단체에 788,850천 원의 선수수당이 지급되었고 ② **대카**(회장 AI)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받은 훈련계획을 국가대표관리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2022년도 선수수당 1,120,000원이 과지급되었으며, ③ 현행 대한체육회 국가대표관리시스템 기능은 [표 24]의 「회원종목단체 관련 보조금 지원예산 집행지침」 신설 조항에 따라 식사 횟수와 훈련일수를 연계(조·중·석식 중 1식 이상 등록하면 훈련일수로 인정하여 선수수당 자동계산)함에 따라 식사를 하고 훈련하지 않는 경우²⁴⁾에도 식사 횟수와 연동된 훈련일수로 인해 선수수당이 잘못 지급될 가능성²⁵⁾이 있어 훈련여부에 따라 훈련일수가 연동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필요²⁶⁾

[표 24] 국가대표 강화훈련 훈련일수 인정 기준

| 2018년 | 2019년 |
|--|--|
| 조조훈련, 오전훈련, 오후훈련, 야간훈련 등 하루 중 훈련을 1회 이상 실시했으면 훈련일수로 인정 | 조조훈련, 오전훈련, 오후훈련, 야간훈련 등 하루 중 훈련을 1회 이상 실시했으면 훈련일수로 인정 (신설) 즉, 훈련비(조·중·석식비)를 하루에 1회 이상 사용하였으면 훈련일수로 인정 |

자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관련 보조금 지원예산 집행지침」 발췌

☞ **(체육국 체육정책과장)** ① 대한체육회를 통해 회원종목단체(**대카**)에 잘못 지급된 선수수당 총 1,120,000원에 대해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납받고, ② 식사 여부에 따라 훈련일수를 인정하고 선수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대표 강화훈련 훈련일수 인정 방식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

24) 강화훈련 집행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말 외박을 하지 않거나(훈련을 하지 않는 상황) 국외 전지훈련기간 중 현지 여건에 따라 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식비는 인정하되 훈련하지 않아 선수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
25) 다만 이 경우[▲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말 외박을 하지 않는 경우(훈련 미실시 전제) ▲국외전지훈련 기간 중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훈련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에도 회원종목단체는 식사를 하고 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식사를 하고 훈련하지 않았다고 입증할만한 부적정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음
26) 식사 여부가 아닌 훈련 여부와 훈련일수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개선할 경우 훈련 여부에 따라 훈련일수가 인정되어 선수수당이 지급되므로 숙식비는 지원하되 훈련을 하지 않아 선수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말 외박을 하지 않는 경우(훈련 미실시 전제) ▲국외전지훈련 기간 중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훈련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는 식사 여부를 선택하면서도 훈련 여부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선수수당이 자동계산되는 문제는 해결됨

며, ③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국가대표 훈련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회원종목 단체(단체 등 45개 간접보조사업자)가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훈련결과보고서로 훈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선수수당이 지급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선수수당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대한체육회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

③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운영사업 관리업무 부적정

- 영화진흥위원회(대표 F)는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운영’을 보조사업자(단체)가 수행하도록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교부조건으로 ‘장비수선비 불인정’을 약정하였는데도, 사업계획 승인과 정산 시 이를 승인하여 보조사업자 소유 장비 수선비로 1,159,640원을 집행
-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보조사업 공고문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살피고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6_③과 병합 조치)

붙임

단체별 지적 및 처분 현황

| 연번 | 보조사업자 | 사업명 | 지원금액 | 지적금액 | 지적내용 | 조치요구 | 조치기관 | 유형별 |
|----|------------|--------------------------------------|--------|------|---|------|----------------------|-----|
| 1 | 개자 | 지역문화진흥('20~'22) *11개 보조사업 | 23,531 | 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내부 지침을 초과하여 회의-강사로 등 지급 보조사업(홈페이지 기능개선) 과업대상 및 범위 선정 등 보조사업 관리 부실 | 통보 | 지역문화정책과 | 2.2 |
| | | 7차 사업활동지원('20~'22) | 10,193 | 14.9 | | | 지역문화정책과 (2.2와 병합) | 8.1 |
| | | 소계 | 33,724 | 15.8 | | | | |
| 2 | 재자 | 2022 공예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210 |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직원에 대한 사례비 집행 자문회의 미참석자에 대한 사례비 집행 | 통보 | 시각예술 디자인과 | 1.1 |
| 3 | 체자 | 2021 오르락내리락 건강한 산행문화 교육사업 | 19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 기관운영 경비로 보조금 집행 | 통보 | 체육정책과 | 1.2 |
| 4 | 카카 | 스포츠클럽 육성사업('20~'21) | 300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이 다른 보조사업에 보조금 집행 | 통보 | 체육진흥과 | 1.3 |
| 5 | 태타 | 만화 해외진출 지원사업('21~'22) | 868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대상이 아닌 대상에 대해 집행 | 통보 | 대중문화산업과 | 1.4 |
| 6 | 해하 등 5개 단체 |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20~'22) | 4,224 | 5.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교부 약정서 내용과 다르게 집행 | 통보 | 영화진흥위원회 | 1.5 |
| | | | | | | 주의 | | |
| 7 | 개사 |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 1,280 | 4.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교부 약정서 내용과 다르게 집행 | 통보 | 영화진흥위원회 | 1.6 |
| | | | | | | 주의 | | |
| 8 | 바바·세사 | 2022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 453 | 16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참가 강사에 대한 강사로 지급 등 | 통보 | 한국콘텐츠진흥원 | 1.7 |
| 9 | 개자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20~'22) *12개 보조사업 | 5,220 | 13.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내부 지침을 초과하여 회의-강사로 등 지급 | 통보 | 문화기반과 | 2.1 |
| |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지원('20~'22) *3개 보조사업 | 751 | 0.6 | | 주의 | 문화기반과 | |
| | | 소계 | 480 | 14.7 | | | | |
| 10 | 개카 |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 | 480 | 14.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강의지도 시간과 관계없이 전문가 활용비 지급 | 통보 | 한국콘텐츠진흥원 | 2.3 |
| | | | | | | 주의 | | |
| 11 | 내나 | 공공수어 보급 및 수어교육 지원 사업('20~'21) | 370 | 3.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부조건 등과 다르게 내부직원에게 수당 지급 | 통보 | 국어정책과 | 2.4 |
| | | | | | | 주의 | | |
| 12 | 개타 | 2022 태권도사범 해외파견 사업 | 6,000 | 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지급기준을 초과한 주택수당 지급 및 해외파견자의 동반가족의 비자발급 경비 집행 | 통보 | 스포츠유신팀 | 2.5 |

| 연번 | 보조사업자 | 사업명 | 지원금액 | 지적금액 | 지적내용 | 조치요구 | 조치기관 | 유형별 |
|----|-------|---------------------------------|-------|------|--|--------------|-----------|-----------------|
| 13 | 개관 | 2021 서울 인디뮤직 페스티벌 | 400 | 1.1 | ▪ 당초 사업계획상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임차료 집행 | 통보 주의 | 대중문화산업과 | 3.1 |
| 14 | 개화 | 언어문화 자원봉사단 지원 | 165 | 9.9 | ▪ 당초 사업계획상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홍보사업 진행 | 주의 | 관광기반과 | 3.2 |
| | | 외국인 언어불편해소 지원 | 500 | 8.8 | ▪ 용역계약에 대한 이행관리 및 검수 소홀 | 주의 | 관광기반과 | 5.3 |
| | | 소계 | 665 | 18.7 | | | | |
| 15 | 내과 |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in 세종 | 720 | 0.1 | ▪ 보조사업 출장비 오지급(7건) | 통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4.1 |
| 16 | 개과 | 2020 개과 운영지원 | 200 | 1.8 | ▪ 임원 직무수행경비에 대해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실시(2명) | 통보 (시정안료) | 국제문화과 | 4.2 |
| 17 | 내과 | 국민체력인증 | 165 | 0.5 | ▪ 직원의 연장근무 및 휴일수당 지급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 | 통보 | 내과 | 4.3 |
| 18 | 내과 | 부정행위 예방 모니터링 및 적발인력 운영('20~'22) | 602 | 554 | ▪ 보조사업수행 인력에 대해 별도 채용없이 단체직원 활용 및 인건비 집행 | 주의 | 스포츠산업과 | 4.4 |
| |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야구장 만들기 | 290 | 290 | ▪ 2천만 원 초과 계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미이용 | 통보 | 스포츠산업과 | 5.4 |
| | | 소계 | 892 | 844 | | | | |
| 19 | 내사 | 2021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 367 | 1 | ▪ 음향장비 임대차 계약업체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절차 미이행 | 통보 | 지역문화정책과 | 5.1 |
| 20 | 개화 |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20~'22) | 2,240 | 822 | ▪ 일반경쟁 입찰대상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 | 통보 | 국어정책과 | 5.2 |
| 21 | 내과 | 바둑대회개최 지원사업('20~'22) | 2,416 | 0.4 |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대회 참가비) 미반납 | 통보 | 체육정책과 | 6.1 |
| 22 | 내과 |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운영('20~'22) | 600 | 96.7 |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승인 없이 해당 보조사업 재사용 | 주의 | 영화진흥위원회 | 6.2 |
| | | | | 1.1 | ▪ 보조금 교부약정서상 금지항목에 대해 승인 등 관리 부적정 | | | 영화진흥위원회 (6.2병합) |
| 23 | 내과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최 지원('20~'22) | 1,300 | 22.1 |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승인 없이 해당 보조사업 재사용 | 주의 | 영화진흥위원회 | 6.3 |
| 24 | 내과 | 2022 관광기금 용자 상시 지원센터 운영 | 150 | 2.45 | ▪ 주관부서 승인 없이 대표자가 같은 단체에 대관료 등 지급(개정지침 통보 전) | 주의 | 관광정책과 | 7.1 |
| | | 2022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 대상 관광 안내 사업 | 400 | 0.4 | ▪ 주관부서 승인 없이 대표자가 같은 단체에 대관료 등 지급(개정지침 통보 전) | 주의 | 국제관광과 | |
| | | 2022 관광인력 고용보험 정착지원 사업 | 120 | 0.4 | ▪ 주관부서 승인 없이 대표자가 같은 단체에 대관료 등 지급(개정지침 통보 후) | 통보 | 관광기반과 | |
| | | 관광산업 | 457 | 1 | ▪ 주관부서 승인 없이 대표자가 같은 단체에 | 주의 | 관광정책과 | |

| 연번 | 보조 사업자 | 사업명 | 지원 금액 | 지적 금액 | 지적 내용 | 조치 요구 | 조치기관 | 유형별 |
|----|-----------------------|---------------------------|----------|----------|---|----------|------------------|-----|
| | |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관련 사업 | | | 대관료 등 지급(개정지침 통보 전) | | 관광기본과 관광산업정책과 | |
| | | 소계 | 1,127 | 4.25 | | | | |
| 25 | 내차 | 2022 세계 한국어 한마당 | 600 |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부서 승인 없이 대표자가 같은 단체에 학술대회 운영 대금 지급 | 주의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 7.② |
| 26 | 내자 등 45개 회원종목단체 | 국가대표 훈련지원 ('20~'22) | 86,695 | 789.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계획 변경사항 미반영에 따른 훈련수당 오지급 국가대표 선수수당 지급절차 및 훈련일수 인정기준 등 관리체계 개선 필요 | 통보 | 체육정책과 | 8.② |